

#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사업자) FAQ

2021. 4. 7.(수)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 답변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1. 신청(접수) 절차 및 신청자격요건 관련

- Q.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Q.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
- Q.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Q. '대중음악 공연 예술활동' 분야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Q. 지원받는 기간 내에 반드시 공연을 개최해야 하나요?
- Q. 준비해야 하는 공연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이 있나요?
- Q.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 최종선정 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 신규 인력채용 관련

- Q. 신규 인력채용은 필수인가요?
- Q.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는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 지원을 받고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신규 채용할 수 있나요?
- Q.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는 신규채용 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데, 여기서 프리랜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Q. 신규인력은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Q. 신규인력 채용 시 반드시 6개월 단위로 채용해야 하나요?
- Q. 신규인력으로 창작자나 실연자도 채용할 수 있나요?
- Q. 사업자 대표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자는 신규인력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
- Q. 최종 선정될 경우, 신규채용에 별도 절차가 있나요?
- Q.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나요?
- Q. 신규 채용에 따른 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 Q. 최종 선정될 경우, 얼마를 지원받나요?

## 3. 증빙서류 관련

- Q. 신청(접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 Q.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Q.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소기업 확인서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Q.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도 되나요?
- Q.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신 납부내역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1

## 신청(접수) 절차 및 신청자격요건 관련

### Q.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자 신청의 경우, 2021년 4월 15일(목) 09:00부터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은 2021년 4월 29일(목) 14:00입니다.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Q.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

A.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http://www.kocca.kr)) 내 '2021년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지원(사업자)' 공고문 하단에 생성되는 '접수'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버튼은 접수기간이 시작되는 4월 15일(목)부터 생성되며, 해당 접수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신규 인력지원(1~5인)이 필요한 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이후 또는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 ※ 지원 제외대상

-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6)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Q. '대중음악 공연 예술활동' 분야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대중음악' 이나 '공연' 단어가 없더라도 대중음악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으며, 관련여부는 제출하신 활동실적을 통해 확인합니다.

Q. 지원받는 기간 내에 반드시 공연을 개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간 내 공연 개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연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 만으로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Q. 준비해야 하는 공연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계획하는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내용 상 공연의 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공연의 규모가 심사 시 선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연의 규모가 아니라, 준비하시는 예술 활동의 내용과 채용하려는 인력의 규모, 인력의 업무 등이 타당하고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Q.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 외 2020년 신규인력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으셨거나, 2021년 신규인력 인건비 외 기타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 신규채용불가 조건 등으로 인해 해당 지원처에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Q. 최종선정 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e나라도움을 통한 등록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 2

## 신규 인력채용 관련

Q. 신규 인력채용은 필수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활동에 투입될 인력의 신규채용 1인~5인까지에 대해 인건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음

-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③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Q.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는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 지원을 받고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신규 채용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일 이전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인력이더라도 공고일 현재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별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Q.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는 신규채용 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데, 여기서 프리랜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고일(2021년 4월 5일)~선정일(2021년 5월중)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Q. 신규인력은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규인력은 최대 5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규인력 채용 시 반드시 6개월 단위로 채용해야 하나요?

A.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업무의 특성상 6개월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신청 단계부터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고용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하든지 채용 조건인 '4대보험 가입'과 '채용 기간 동안 최소 주 30시간 근무'의 원칙은 지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6개월 미만으로 고용한 인력의 근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른 인력을 채용(대체)하여 남은 기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규인력으로 창작자나 실연자도 채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용의 기본 조건인 '채용 기간 동안 최소 주 30시간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의 원칙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Q. 사업자 대표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 대표나 기존 직원은 신규 인력채용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자는 신규인력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제출한 신규채용 예정인력에 대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아래 근로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필수이며, 최소 주 30시간 근무해야 함(6개월 이상)
- '21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21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1,822,480원)
- 신규 채용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Q. 최종 선정될 경우, 신규채용에 별도 절차가 있나요?**

A. 별도로 주최 기관 측에서 정하는 절차나 제한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채용 과정에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본 지원사업에서는 주 30시간 근무(6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내 주 3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에서 관리 및 지원합니다.

**Q. 신규 채용에 따른 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선정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Q. 최종 선정될 경우, 얼마를 지원받나요?**

A. 사업자 당 신규 채용 인력 최대 5인을 지원하며, 1인 기준 월 1,800,000원 × 6개월 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은 세전이며,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신규 채용인력의 실 수령액은 월 147만원 내외입니다. 인건비는 추후 협회의 사업관리에 따라 80%를 우선 지급받고, 협회의 중간점검 후 잔여 지원금 2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 및 관리됩니다.

### 3

## 증빙서류 관련

Q. 신청(접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A.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페이지에서 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압축 파일명 : 사업자명)

① (필수) 지원신청서 및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필수) 유효기간 내 접수마감일이 포함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⑤ (필수) 고용보험명부(2021. 1. 1. ~ 2021. 4. 5. 기준 조회본) 1부

Q.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1년 4월 5일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일자는 상관없음

[국세 납세증명서] 2021년 4월 5일 이후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1년 4월 5일 이후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2021년 4월 29일이 포함되어야 함

[고용보험명부] 2021년 1월 1일~2021년 4월 5일 기준 조회본

Q.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소기업 확인서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해도 유효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도 유효합니다.

Q.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신 납부내역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두 서류는 체납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